경기도 공고 제2020 - 385호

-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
경력경쟁채용시험(법무분야) 신체검사 등 일정 공고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법무분야) 신체검사, 서류접수 및 인·적성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신체검사

가. 기 간 : **2020. 2. 25.(화) ~ 2. 27.(목)**【3일간】

나. 대 상 : 6명 (법무분야 원서접수자)

다. 검사병원 : **3개소** ☞【붙임 1】참조

- **아주대학교병원**(수원시 영통구 소재) 웰빙센터(건강증진센터) 4층(☎1688-2118, 2번 선택)
- **동수원병원**(수원시 팔달구 소재) 건강증진센터 1층(☎031-210-0285, 0294, 0777)
- **의정부백병원**(의정부시 소재) 건강증진센터 지하1층(☎031-843-8383)

※ 3개소 지정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3개소 중 1개소의 병원만 선정하여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라. 검사방법 : 지정 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개인별 예약 후 방문 검사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붙임 3】참조

마. 준 비 물 : 응시표, 반명함판(3×4㎝) 사진 2매(응시원서 등록사진 지참), 필기구, 신분증*, 신체검사 수수료**(응시자 본인 부담)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아주대학교병원 : 55,000원, 동수원병원 : 55,000원, 의정부백병원 : 40,000원

바. 복 장 : [남자] → 단추 없는 면티 상의 착용 권장, [여자] → 자유복

사.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에 따라 신체검사 후 '신체검사서'의 합격여부로 결정

아. 신체조건 및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 5](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붙임 4】 참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3](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붙임 5】 참조

자. 합격자 발표 : 불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 서류접수(전형)

가. 기 간 : **2020. 2. 25.(화) ~ 2. 27.(목)**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나. 대 상 : 6명 (법무분야 원서접수자)

다. 장 소 : **경기도소방학교(본관동) 1층 인재개발팀** ☞ 【붙임 2】 참조

라. 서류제출

❍ 발급 기준일 : 서류접수 최종일(2.27.)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제출방법 : 분야별 서류를 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해당기간에 본인이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붙임 6】 참조

마. 합격자 발표 : 불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서류 전형 추후 별도 시행

3 인·적성검사

가. 일 시 : **2020. 3. 10.(화) 14:00 ~**

※ 13:30까지 입실 및 등록 완료

나. 대 상 : 6명 (법무분야 원서접수자)

다. 장 소 : **경기도소방학교(본관동) 1층 제6강의실** ☞ 【붙임 2】 참조

라. 검사방법 : 응시자 집합 오프라인 검사(OMR답안지 작성) ⇒ 결과는 면접시험 활용

마.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필기구 등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바. 검사비용 : 경기도 지원 (응시자 부담 없음)

4 응시자 유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당부사항 **********

1. 각 단계별 시험장소에 출입전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 개인 위생 용품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을 받은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는 사전신고** 바랍니다. (☏ 031-329-0321~5)
4. 능동감시자, 의심증상자는 응시를 취소하길 권고합니다.
5. 인·적성검사 등록 시, **공고문 [붙임 8-2]의 문진표를 제출**하고 운영요원의 조치에 따르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

- ❍ 대리 검사자 등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 본 일정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https://119.gg.go.kr) 「알림마당」 의 「고시/공고」란 및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119.gg.go.kr/academy) 「시험정보」의 「신규채용 / 공고·고시」란에 공고(공지)함.

나. 신체검사 유의사항

- ❍ 응시자는 경기도에서 지정 한 종합병원(3개소) 중 1개소에서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정밀검사(재검사) 포함]는 실시한 병원에서 일괄 경기도소방학교로 제출**하오니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검진병원이 다른 건강검진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음으로 공고 즉시 **사전예약**을 하여야만 기간 중 신체검사가 가능함.
- ❍ 신분증 등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검사당일 해당병원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체검사에 임하기 바람.
- ❍ 검사당일 최소 8시간 전부터 신체검사 종료시까지 공복(음식물, 약물, 물, 담배, 껌, 커피 등 금지)을 유지하여야 함.
- ❍ 색각 이상자의 경우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개인병원 제외)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응시 바람.
-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하기 바람.
- ❍ 검사병원에서 문진(설문조사 포함) 등 진료 시 허위 답변(작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당해 시험 불합격 처분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다. **서류접수**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연락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즉시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함.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서류전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람.

❍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면허)증 사본 이외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초본, 법원 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함.

라. **인·적성검사**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인·적성검사 당일 **13:30까지 등록완료**하고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등록 마감시간까지 시험장(제6강의실)으로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응시포기로 간주함. * **시간경과 시 등록불가**

❍ 인·적성 검사의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써 미 응시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인·적성검사장에는 응시자 이외는 출입할 수 없음.

붙임 1. 신체검사 장소 안내 1부.
2. 서류접수 및 인·적성검사 장소 안내 1부.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6. 서류접수 구비서류 안내 1부.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8.「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응시자 안내문 1부.
8-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감염증 사례 정의 1부.
8-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문진표 1부. 끝.

❑ **시험관련 문의 :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
▸ 전 화 : 031) 329 - 0321 ~ 5 / ▸ 홈페이지 : https://119.gg.go.kr/academy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봉명리)

❑ **응시표 출력 문의 : (주)진학어플라이**
▸ 전 화 : 1544-7715 / ▸ 홈페이지 : https://ggfire.jinhakapply.com

경기도소방학교 시험정보 : https://119.gg.go.kr/academy / 시험정보 / 신규채용 / 공고·고시

붙임 1 신체검사 장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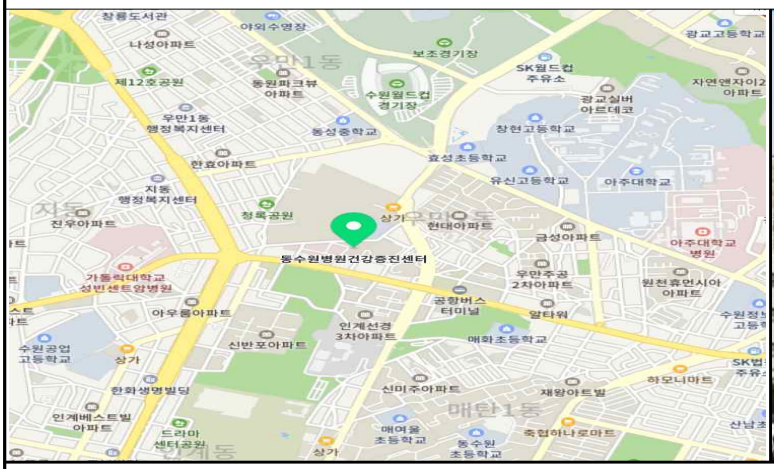
※ 찾아오시는 길은 해당 병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웰빙센터(건강증진센터) 4층】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 1688-2118, 2번 선택)





【동수원병원 건강증진센터 1층】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 031-210-0285, 0294, 0777)





【의정부백병원 건강증진센터 지하1층】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 031-843-8383)





붙임 2 서류접수 및 인·적성검사 장소 안내

※ 이용 교통수단 및 거리 등 사전에 필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본관동)】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봉명리) (☏ 031-329-0321~5)



⊙ 교통편 안내

▶ 시내버스 이용(11번 가곡여객)

- 이용방법 : 오산역 앞에서 남사면 성은리행 11번 버스(가곡여객) 탑승
  ⇨ 봉명4리 하차(GS주유소 앞)
- 소요시간 : 약 55분

▶ 택시 이용

- 이용방법 : 오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탑승 ⇨ 경기도소방학교(본관동) 하차
- 소요시간 : 약 30분

▶ 자가용 이용

1.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이용

경부고속도로 오산 요금소 전방 100m 지점 ⇨ 고가 밑으로 좌회전 후 800m 직진 ⇨ 안성(양성)방향 좌회전 ⇨ GS주유소 좌회전 ⇨ 경기도소방학교

2. 1번국도 이용

한전사거리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 안성(양성)방향 직진 ⇨ GS주유소 좌회전 ⇨ 경기도소방학교

붙임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4㎝)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합격여부	[ ] 합 격 [ ] 불 합 격 [ ] 판정보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붙임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구 분	내 용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6 서류접수 구비서류 안내

※ 제출여부에 '○' 표기 후, 해당 증빙서류 첫 장에 함께 편철하여 제출

성 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임용예정 시·도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홍길동	123456	법무분야	경기도	소방경	사법시험 합격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 여부
【공통사항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1부	○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으로 발급) 1부	
5	변호사시험 합격증서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 1부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소방학교에서 배부
【해당자만 제출서류】		
7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8	군 경력증명서 및 자력표 각 1부	
9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의사상자 등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작성요령> 위 작성은 예시이며 서식을 다운받은 후 응시자 해당사항에 대하여 목록 순으로 작성 및 편철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 스테이플러 ×>	

【구비서류 세부 안내사항】

① 기본증명서 1부
- 응시자 본인기준, 상세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뒷번호는 본인만 공개) 모두 기재

②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과거 주소변동 상세이력 기재 및 병적사항이 전체 나오도록 제출

③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A4 용지에 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을 1장으로 복사하여 제출

④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경찰서 방문 발급 또는 경찰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및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면허 취득 후 "전체" 경력으로 설정 발급(면허이력, 법규위반, 사고내역 등 전체 포함)

⑤ 변호사시험 합격증서(법무부장관 발급)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사법연수원장 발급) 1부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해당 서류로 한가지만 제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 7】참조
- 경기도소방학교 등록 장소에서 배부 후 작성, 자필 서명

⑦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응시 상한연령 연장자**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4.1)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⑧ 군 경력증명서 및 자력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확인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부대),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계급별 임용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⑨ 취업지원대상자 및 ⑩ 의사상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가산특전을 받은 자**로서 **신체검사 전일(2. 24.)까지** 등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취업지원대상자) 또는 보건복지부(의사상자 등) 발행 증명서

≪**제출서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최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이외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클립 또는 집게로 활용)
- **각종 서류는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기 바람.**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가산점 입력사항과 상이하거나, 허위증명, 자격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응시자는 개별 통보 함.

붙임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공채, 경채) 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기도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table>
<tr><td>수집·이용 목적</td><td>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td></tr>
<tr><td>개인정보 처리 근거</td><td>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td></tr>
<tr><td>수집·이용할 항목</td><td>-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td></tr>
<tr><td>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td><td>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제공받는기관</th><th>제공근거 및 목적</th><th>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th><th>보유 및 이용기간</th></tr>
<tr><td>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td><td>-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td><td>- 성명, 주민번호</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국세청</td><td>-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사실 등 확인</td><td>- 성명, 주민번호</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경력증명서 발급기관</td><td>-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td><td>-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여부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번호, 취득일자, 전공명</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r><td>자격증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발급 기관</td><td>-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여부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 확인</td><td>-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 성명, 주민번호, 보훈번호 등</td><td>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td></tr>
</table></td></tr>
<tr><td>보유·이용기간</td><td>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td></tr>
<tr><td>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td><td>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td></tr>
<tr><td>수집·이용 동의 여부</td><td>경기도에서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td></tr>
</table>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붙임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시자 안내문**

응시자 안내문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응시자들께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각 단계별 시험장소에 출입전 반드시 발열체크 및 소독제로 손 소독과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응시자는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을 받은 자 ⇒ 각 시험 단계별 시험응시 불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 사전 신고(☎ 031-230~0321~5)
   ※ 사전 신고기간 : 각 시험 시행일 기준 D-7일부터 D-1일(09:00~20:00)
3. 발열체크 시 이상증세*가 나타난 응시자 ⇒ 관할 보건소 통보 조치
   * 37.5℃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

★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8-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 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5판 기준

□ 사례 정의

*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 개정 시 내용 변경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신고 대상

1.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
2.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붙임 8-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문진표

□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관리와 해외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문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오니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예	아니오
1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한 적 있나요?		
1-1	방문하였다면 지역은 어디인가요? (나라명 : , 지역명 :)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와 만난 적이 있다.		
3	확진환자가 발생 혹은 경유한 병원, 호텔 등을 다녀온 적이 있다.		
4	발열, 오한,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		

□ 본인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응시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성 명	(서명)

□ (열감이 있는 경우) 체온측정 : (1차) ℃

(2차) ℃